

집합투자기구 수시공시

『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』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- (1)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에 의한 공시 [소규모펀드(1년)여부 공시 대상] : 해당없음
- (2)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5호에 의한 공시 [소규모펀드(1개월)여부 공시 대상] : 해당없음
- (3)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[이행계획 공시] : 해당없음
- (4)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 [이행실적 공시] : 해당없음
- (5)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 [이행실적 공시(세부)] : 해당없음

(6) 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 [소규모펀드 비율 공시]

보고서코드	회사코드	공모추가형 펀드수(운용펀드기준)				소규모 펀드수				소규모펀드비율 (=H/D)	제출기준일
		전체 (A)	부실자산 펀드수 (B)	(구)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개인연금펀드 (C)	차감 계 (D=A-B-C)	전체(A)	부실자산펀드 중 소규모 펀드(F)	(구)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개인연금펀드 중 소규모펀드 (G)	차감 계 (H=E-F-G)		
GSMC	A01018	100	14	0	86	18	14	0	4	4.7	20180731



신한 BNP 파리바
자산운용



* 위 대상 집합투자기구는 법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라며(이행계획 공시, 이행실적 공시, 소규모펀드 비율 제외),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사 또는 해당 판매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